

정책토론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본 자료는 2017년 8월 28일 개최된 정책토론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CONTENTS

정책토론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I. 개최 취지 5

II.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6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 6

III. 토론내용 요약 10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 본부장) 10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11

「전우현」 (한양대학교 교수) 12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13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 15

I. 개최 취지

- 자동차보험은 우연히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 손해를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보상하는 제도임
 -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고 사고책임에 맞는 손해배상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음
 - 사고책임이 크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면 사고예방 효과는 미미할 것임
- 따라서 손해정도와 사고책임에 맞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손해가 보상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선량한 계약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
-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과잉치료와 음주운전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손해정도와 사고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보상이라는 지적이 있음
 -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는 보험금 지급을 증가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부담을 확대시킴
 - 또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조장할 수도 있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수 있음
- 이에 본 토론회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여 선량한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보험의 사고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됨

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

1. 음주운전 억제 등 사고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현행 사고부담금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9조, 동법 시행규칙 10조)는 대인사고 1건 당 300만 원, 대물사고 1건 당 100만 원으로 사고책임에 대한 부담을 한정하고 있어 음주·무면허 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함
 - 사고부담금제도는 2004년 음주·무면허 운전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고 2015년 증액되었음
 - 그러나 제도 시행 후 2005~2015년 음주운전사고 연평균 발생 건수는 27,379건으로 1993~2003년 연평균 발생 건수 23,414건에 비해 17.0% 증가함
 - 오히려 사고부담금을 지급하면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및 민사적 합의를 하고 음주운전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은 민사적 합의를 이유로 감경되는 경향이 있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함
-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10조의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가해 운전자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음
 -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0%가 아닌 1%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배상해야 함
 - 게다가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가 더 많을 경우 과실비율이 적은 피해 운전자의 다음 연도 보험료 할증 폭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함
- 사고부담금제도 강화와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 개정은 음주운전 억제의 필요조건이고 불법행위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위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예: 20% 한도)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 방안(자배법 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10조 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 음주·무면허 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위반행위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본인 치료비의 최대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자배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9조 개정)이 도입될 필요

2. 경상환자 과잉치료 억제 방안

■ 치료비지급보증제도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1999년 도입되었음

-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 분쟁을 조정하고 자동차 사고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목적임
 - 자배법 12조는 보험회사 등이 보험가입자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자동차 사고 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치료비지급보증제도의 규정 미비로 인한 무한지급보증 관행으로 인해 과잉치료가 발생할 수 있고, 과잉치료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작용

-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내원 시기와 내원 당시 상해정도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비대칭성이 발생함
-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으로 보험회사는 환자의 치료기간과 치료금액 추산이 어려워 기한 없고 금액한정 없이 치료비 지급보증을 할 수밖에 없음
 - 대인배상1분 아니라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의 담보에도 지급 보증이 적용되는데, 대인배상2의 경우 배상금액 한도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금액한정 없이 치료비 지급보증을 할 수밖에 없음
- 치료비 지급보증에 기한과 금액한정이 없어 의료기관과 환자의 과잉치료 유인이 높아짐

- 예를 들어,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고 치료 종결 시점에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경우, 장기 치료를 받은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상대 운전자의 차년도 보험료 할증에 반영되는데 과도한 치료비로 보험료 할증 폭이 클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자배법 12조 개정) 하여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유인을 억제하여 합리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 등이 교통사고 환자 내원 시, 그 사실과 지급보증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상해정도 등)을 보험회사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는 상해정도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의료기관 등이 보험회사에 알린 정보에 근거한 지급보증 금액 한도와 기간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참조하여 지급보증 금액 한도와 기간을 증액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취지를 유지할 수 있음

- 과잉치료와 보험금 과다청구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준 제정과 적용, 그리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자배법 15조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합리적 피해자 보호, 형평성 제고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 억제가 기대됨

표 II-1 제도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제도	현행	개선방안	기대효과
사고부담금 확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사고 1건 당 300만 원(대인), 100만 원(대물)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가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20% 사고부담금 징구,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강화 사고예방을 위해 현행 사고부담금제도를 음주·무면허 운전 이외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확대하는 방안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제재 강화 사고책임부담을 통한 사고예방
치료비 전액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라도 무과실이 아닐 경우 음주 운전 가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가해자 본인 치료비 일부(최대 50%)를 본인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평성 제고
치료비지급 보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교통 사고 환자 내원 여부를 통보, 보험회사는 지급 보증 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를 통보 통보 시점, 절차에 대한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 내원 시 보험 회사에 즉시 통보 환자의 상해정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정보 비대칭 완화, 합리적인 지급보증 유도 계속치료 필요 시 재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잉치료 억제로 보험금 누수 억제 합리적인 피해자 보호

Ⅲ. 토론내용 요약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 본부장)

- 자동차보험은 자배법상 의무보험으로 準 공보험적 성격을 가지므로 피해자 보호는 물론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그러나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가해자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명이 사망하더라도 300만 원만 직접 부담할 뿐,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틀을 가지고 있음
 - 결국, 음주사고 등의 가해자가 부담함이 마땅한 패널티를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신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오늘 전용식 박사님의 발제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억제함으로써 가입자 보호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는 음주사고나 음주폭행 등에 매우 관대하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보호와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일본의 1.5배, 미국의 2배 등으로 그 사고 건수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이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적 손해는 300만 원으로 제한되고 있어 그 형벌이 매우 가벼움
 - 독일의 경우 음주운전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치료비전액지급제도의 피해자 보호 취지와 달리 피해자가 1% 과실만 있어도 음주운전자의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치료비 지급보증기간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나이롱 환자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 간 적정 진료절차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교통사고 환자 지불보증 관련 기초자료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심평원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한 구속력과 조사 권한을 갖는 방안은 진료비 심사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심평원에 현지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심평원 심사위탁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관대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재정적 처벌이 매우 가벼운 상황임
 -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의 경우 한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지만 가해자의 경제적 손해는 단 300만 원에 불과함
 -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300만 원의 재정적인 부담과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됨
 -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사회 정서와 가벼운 재정적 부담, 경미한 형사처벌 등으로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50%를 상회하고 있음
 - 법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사망 시 가해자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까지 형량 한도를 확대하였으나 이는 국내 방화범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 기준인 무기징역 또는 외국의 사례에 비해 가벼운 수준임
 - 이는 음주운전자를 과실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음주를 사전에 자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범으로 보아 형법상 최대 형량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의 경우 얼마 전 9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함
 - 17년 전 잔디 깎는 기계 사고로 한 쪽 다리를 잃은 뒤 진통제와 술을 남용해 온 미국의 리처드 존스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상 처음으로 사형을 구형받았고 재판부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음

- 음주운전의 경우 구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의 효과보다는 벌금형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현재 300만 원의 개인부담금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선량한 피해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금융감독원이 먼저 나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궁금함

「전우현」 (한양대학교 교수)

- 오늘과 같은 논의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기술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기술발전과 함께 사회 전반의 도덕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함
 - 한 예로 17세 고등학생이 무면허 상태로 친구와 동승한 차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동승자가 사망하여 배상금 약 1억 원이 발생하였음. 그 학생은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없었고 3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 배상금을 갚아나가고 있음

-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가 음주에 대해 관대하다는 점도 큰 문제임
- 음주운전은 음주상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과실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 상법 732조의 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에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보험회사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 한 사회의 정신문화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기술발달이 무의미해질 수 있음
 - 로마 등 세계를 제패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정신적인 부분이 물질적인 부분에 비해 먼저 발달하였음
 - 특히 최근 중국의 연구를 보면 “보험제도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 라는 원칙을 철저히 규정하고 이를 제대로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① 음주운전 가해자 사고부담금 상향조정 ②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의 본인 치료비 직접 부담 ③ 현행 사고부담금제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확대 ④ 진료비 무한지급보증제도 등이 개선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법과 약관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함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전용식 박사님께서 자세히 정리해주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대인배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앞선 토론 내용에도 모두 동의함

- 특히 주제발표에서 우리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세하게 정리해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음
- 우리 사회는 음주에 전반적으로 관대하며 특히 범죄 처벌 시에도 음주상태는 감형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음
- 자료에서 음주·무면허·뺑소니를 같은 상태로 보았는데 뺑소니는 자기보호기제에 따라 우발적으로 도주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으나 음주·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전에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를 인지하고 있어 고의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음
- 현행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한 데 대한 부작용으로 음주운전자까지 과잉보호하게 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음주운전이 단 한차례라도 적발된다면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맥락에서 나이롱 환자 문제의 경우 보험제도의 근간을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보험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지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은 보험의 원칙에서 벗어남
 - 소비자가 과잉보호될 때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음주운전 처벌 및 본인부담은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나이롱 환자 문제의 경우 보험회사의 무한지급보증제도를 개정해야 함
- 손해보험협회 박종화 상무님의 토론 내용과 주제발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함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

- 종대과실 사고를 예방 및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정부의 시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 총론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각론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 사고부담금제도의 부상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자배법 1장 1조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취지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임

- 가해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증가가 음주운전 감소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 음주운전 감소 또는 증가와 관련한 사고부담금제도의 역할을 통계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또한 음주운전 단속을 부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각을 가지도록 해야 함
 - Broken Window Theory는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 단속을 강화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 사후적으로 방지해야 함

- 음주운전 가해자로 인한 부당한 부담이 선량한 운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에는 공감하나, 부상범위를 확대한다면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즉,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지워졌던 부당한 부담은 환원되어야 함
-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가 환원되지 않는다면 제도 개선이 보험금 규모를 줄여 보험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
- 또한 사고 당사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게 하자는 자배법의 의도와 관계없이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와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한다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치료비 지급보증제도와 관련하여 자배법은 책임보험 한도에 대해서만 전액 지급을 보증하고 있고 나머지 무한 지급보증은 대인배상2 즉,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업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지금까지 오늘 음주운전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된 좋은 취지가 제대로 제도화 되도록 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말씀드렸음

정책토론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발행일 | 2017년 9월

발행인 | 한기정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처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